(뒤 쪽) 작 성 방 법 1.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“접대비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”의 ⑦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. 2. ② 기준금액\*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“접대비조정 명세서(을) [별지 제23호서식(을)]”의 ⑯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. \* 기준금액(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41조제1항) - 경조사비：20만원 -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：3만원 3. 일반접대비한도(④~⑧) 가.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,200만원, 중소기업은 3,600만원을 적용합니다. 나.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“접대비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”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. 다.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“접대비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”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. 라.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｢법인세법｣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(④＋⑥＋⑦)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 마. ⑦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%를 적용합니다. 바.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50%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 4. 문화접대비 한도(⑨~⑩)는 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｢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｣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. 5.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“0”으로 적습니다. 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